

# 소 장

원 고 참여연대

대표자 김종배, 박상중, 박은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이상훈

피 고

1. 재정경제부 장관

2. 기획예산처 장관

3. 행정자치부 장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1. 피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2000. 1. 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및 피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갈

은날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부분비공개결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이 유

### 1.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가. 원고는 시민단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1997년 이후에 지출한 다음 항목에 대한 지출결의서(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및 유사명칭의 서류 포함)와 지출증빙 1. 정원가산금 2. 업무추진비(기준경비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전부 포함)”이었습니다.

### 2. 이 사건 처분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피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2000. 1. 6.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피고 기획예산처장관 및 재정경제부 장관은 같은날 정보부분비공개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처분들을 고지받았습니다.

### 3. 이 사건 처분들의 위법성

#### 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의의

(1)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소위 “판공비”라고 불리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피고들이 작성한 서류들입니다.

(2)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혹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납세자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단체인 원고가 중앙부처인 피고들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알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나. 비공개사유에 대한 검토

(1) 피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시행규칙 소정의 양식에도 의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하의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법 소정의 비공개 사유로 주장된 것은 법 제7조 제1항 제6호입니다. 그리고 피고 재정경제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은 법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를 비공개사유로 들었습니다.

(2)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제7호의 비공개사유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입니다.

(3) 먼저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

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중에는 법인이나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의 비공개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들은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정보들이 어떤 정보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4)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장관을 비롯한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만나서 식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거나 현금을 지급한 상대방이 다른 공무원이거나 자문역과 같이 공적인 업무에 관련된 인물일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직무상 공무원들을 만난 것이므로 프라이버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관을 비롯한 해당부처 공무원들이 만나거나 돈을 지급한 상대방이 순수한 사인(私人)인 경우에도, 법 제7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다.항 소정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3. 결 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개청구한 각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것이기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로13길 2-1 (남산1동) (국립중앙도서관)  
TEL: (02)723-4253 FAX: (02)723-5055

1. 갑 제1호증의1,2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1. 갑 제2호증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기타의 입증방법은 변론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분 3통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납부서

2000. 3.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승 수

변호사 이 상 훈

서울행정법원 귀중

## 별지 목록

1997년 이후에 지출한 다음 항목에 대한 지출결의서(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및 유사명칭의 서류 포함)와 지출증빙

1. 정원가산금
2. 업무추진비(기준경비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전부 포함)

우427-760/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제정경제부 /전화503-9034/총무과/장현덕

정보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총무 12430-23

수 신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참여연대

접수일자	1999.12.1	접수번호	17
청구정보내용	제정경제부가 1997년 이후에 지출한 다음 항목에 대한 지출결의서(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의 서류 포함)와 지출 증빙 1. 정원가산금 2. 업무추진비(기준경비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전부 포함)		
공개내용	1997년 이후 제정경제부(1997~1998.2은 제정경제원)가 지출한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및 첨부영수증(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사본열람.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관련사항은 제외		
부분공개사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		
공개방법	직접공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우송공개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공개일시	2000.1.21(금)	공개장소	제정부회의실
수수료(A)	우편요금(B)	수수료감면액(C)	계(A+B+C)
1건(10매기준)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0년 1월 6일			
제정경제부장관(인)			

감제 1호증 1



위 사본을  
번호사 하 승



# 기 획 예 산 처

경리계장

우137-756/서울 서초구 반포동 520-3/전화 3480-7718/전송 3480-7600/담당부서/총무과

이근우  
사수반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 총부41300-18

수 신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의 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감제  
1호  
2

접수일자	1999.12.1.	접수번호	29
청구정보내용	기획예산처가 1997년 이후에 지출한 다음 항목에 대한 지출결의서(지출결의서, 예산집행과 지급결의서 및 유사 명칭의 서류 포함)와 지출증빙 1. 정원가산금 2. 업무추진비(기준경비뿐만 아니라, 각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 전부 포함)		
공개내용	98.2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 및 99.5 기획예산처의 발족 이후 지출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중 지출결의서 및 첨부 영수증(신용카드의 경우 이용대금명세서) 사본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		
부분공개사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		
공개방법	직접공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복제물	
	우송공개		
공개일시	2000.1.21.(금)	공개장소	총무과
수수료(A)	우편요금(B)	수수료감면액(C)	계(A+B+C)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0년 1월 6일

기 획 예 산 처 장 관 (인)

위 사 본 함  
번호사 하 승





# 행 정 자 치 부

우110-760 /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02) 3703-4172 / 전송(02)3703-5502  
 총 무 과 과 장 김 채 용 사무관 이 정 한 담당자 박 병 선

문서번호 총무 41341-44

시행일자 2000. 1. 6. (3년)

수신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대표 김중배

참조

선람			지시		
접	일자	.	결재		
수	시각	:			
	번호		공람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목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1. 항상 정의사회 구현과 국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제안을 해 주시는 귀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99.12.1 요구하신 1997년 이후 지출한 우리부의 업무추진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서류의 공개요구에 대하여

○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서류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이름, 주민등록번호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 공개요구한 문서의 분량이 방대할 뿐 만 아니라 이들 문서에서 공개대상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를 분리하는 문제와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등으로 업무 부담의 정도가 과중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관장의 정치적 신념, 국정방향, 지출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전임장관이 집행한 업무추진내역을 당시의 여건을 전혀 알지 못하는 현직장관

이 이를 공개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갑제 2 회신

3. 현 장관의 재직기간중 사용된 업무추진비를 총괄적으로 공개하오니 국익과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귀하가 공개요구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참여연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99.2.6~'99.12.31까지 집행내역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주요사용용도
계	208,963	
일반업무비	122,362	주요정책추진관련 회의, 간담회 및 국제대회 등에 소요된 경비
특정업무비	53,403	대민, 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정원가산금	33,198	직원 경조사비 및 격무부서 격려

끝.

행 정 자 치 부 장

전결 총무과장 김채용



위 사 분 함

변호사 라 승 수

2000 년

호

## 소 송 위 임 장

원 고 참 여 연 대  
당사자  
피 고 재 정 경 제 부 외 2

위 당사자간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 소 : 서울 종로구 안국동 157의3 안국빌딩 3층 참여연대내

辯護士 하 승 수, 이 상 훈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 (1) 일체의소송행위 (2) 반소의제기및응소 (3) 재판상및재판외의화해 (4) 소의취하  
(5) 청구의 포기및인낙 참가에의한탈퇴 (6) 복대리인의선임 (7) 목적물의수령  
(8) 공탁물의납부 공탁물및그이자의반환청구와수령 (9)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신청에대한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수령 동취소결정에대한항고권포기  
(10) 상소의제기 또는 취하

위 소송을 위임함.

서기 2000 년 3 월 일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위임인 : 대표사 김 증배, 박상능, 박은성



辯護士 河昇勳, 李相勳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의3 안국빌딩 3층 (참여연대내)  
TEL: (02)723-4253 FAX: (02)723-5055